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대표발의: 이홍민 의원)

의안 번호	20-77
----------	-------

발의년월일: 2020. 5. .

발의자: 이홍민, 강명숙, 김기석, 김성희,
김종선, 신종갑, 이민석, 조영덕

1. 제안이유

청소년의 노동 인권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청소년이 노동자로서 권리를 제대로 향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청소년, 노동 인권 등을 정의함(안 제2조)
- 나.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다. 청소년의 권리와 보호를 규정함(안 제4조 ~ 제5조)
- 라. 청소년 노동 인권 사업을 규정함(안 제6조)
- 마. 민간협의체 구성·운영을 규정함(안 제8조)
- 바. 청소년 노동 인권 실태조사 및 상담 등을 규정함(안 제9조 ~ 제10조)
- 사. 사업 수행에 따른 지원을 규정함(안 제12조)

3. 관계법령

- 가. 「대한민국헌법」 제32조 ~ 제34조
- 나. 「청소년 기본법」 제3조 및 제8조
- 다. 「근로기준법」 제64조

4. 조 례 안: 붙임

5. 예산조치: 없음

6. 기타사항

가. 관계법령: 붙임

나. 입법예고: 2020. 5. 29. ~ 2020. 6. 4.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하면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의 노동 인권을 보호하고 노동 환경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노동자로 고용이 가능한 24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거나 구에 있는 사업장에서 노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청소년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노동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노동자의 권리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권리를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이외의 용어의 정의는 「근로기준법」을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이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합법적인 노동기준에 맞게 노동계약을 하고, 인권 친화적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한다.
- ② 구청장은 노동을 하는 과정에서 다치거나 인권을 침해당한 청소년을 법률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③ 구청장은 청소년 및 사용자에게 청소년 노동 인권에 관한 교육이 시행되도록 한다. 특히, 특성화고교에 재학하는 청소년에게는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 제4조(청소년의 권리)** ① 청소년은 「대한민국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노동에 관한 권리를 갖는다.
- ② 청소년은 법에 따라 정당한 처우와 적절한 임금,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 ③ 청소년은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근로포기를 통보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 제5조(청소년의 보호)** ① 사용자는 법에 따라 청소년이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거나, 청소년의 건강, 안전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일을 맡겨서는 아니 된다.
- ② 사용자는 청소년에게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업종이나 노동형태

로 일하게 해서는 안 된다.

③ 사용자는 청소년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여야 하며, 신체적, 정신적, 언어적 폭력을 행사하여서는 안 된다.

제6조(청소년 노동 인권 사업) 구청장은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 노동 인권에 대한 홍보·교육
2. 청소년 노동 인권 상담 및 피해신고 지원 체계 구축
3. 청소년 고용 사업장 점검 및 노동 인권 실태조사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시행계획) 구청장은 매년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

제8조(민관협의체) ① 구청장은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기관 또는 시설, 구의회, 교육청, 노동조합, 청소년 노동 인권 관련 전문가, 청소년당사자 등이 참여하는 마포구 청소년 노동 인권 증진 민관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협의체의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청소년 노동 인권 실태조사 및 점검) ① 구청장은 청소년 노동 인권 의식 및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소년 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청소년 노동 환경을 점검·계도하는 ‘청소년 노동 인권 지킴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청소년 노동 인권 상담 및 구제 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청소년 관련 기관과 협조하여, 그 기관에서 청소년 노동 인권 상담 및 피해신고를 접수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청소년이 노동 인권 상담과 피해신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전용전화를 둘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청소년 관련 기관, 민간단체와 연계하여 청소년 노동 인권 상담 및 구제를 위한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우수사업장 선정 및 홍보 등) 구청장은 청소년 노동 인권 친화 사업장을 선정·홍보할 수 있다.

제12조(사업의 지원)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대한민국헌법」

제32조 ①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③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④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⑤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⑥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제33조 ①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②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③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4조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④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 ⑤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 ⑥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청소년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근로 청소년을 특별히 보호하고 근로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8조의2(교육 및 홍보 등)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근로 청소년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하는 근로 청소년의 권리 등에 필요한 교육 및 상담을 청소년에게 실시하여야 하며,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6. 3. 2.>

「근로기준법」

제64조(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 ① 15세 미만인 자(「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는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就職認許證)을 지닌 자는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가. 제6조 청소년 노동 인권 사업
- 나. 제7조 시행계획
- 다. 제8조 민관협의체
- 라. 제9조 청소년 노동 인권 실태조사 및 점검
- 마. 제10조 청소년 노동 인권 상담 및 구제 체계 구축
- 바. 제12조 사업의 지원

2. 미첨부 근거 규정

- 가.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관광일자리국 일자리지원과 김영환
연 락 처	02-3153-8693